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13. 7. 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 1. 경 과

의안 제226호로 2013년 6월 24일 최재문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 나.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규정 신설(안 제5조의3)
- 다. 위원회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제2항~제4항)
- 라. 위원회 회의록 공개일 및 공개방법 규정 신설  
(안 제8조제2항, 안 제8조제3항)

마. 과태료 부과·징수 조문 삭제(안 제16조)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타 구 제정 현황 : 서초구의 18개 자치구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의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과 해촉사유 규정을 신설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 및

자문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요청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원회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 공개를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고 회의록 공개방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시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2012년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안 제16조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조문의 삭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근거하여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본 조례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반영 되어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 련 법 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3(위원의 제척·회피)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14]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2.4.10>

②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제1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횡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8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44조제1항의 경우: 1천만원
2. 법 제144조제2항의 경우: 5백만원